

든든한주간보호센터 운영규정

- ① 본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등 규정에 따른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 ②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지 않은 자도 본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등급외자” 라고 한다.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 가. 계약기간은 급여개시일로부터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까지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 나. 계약기간 내 등급 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자동 종료되며, 재계약을 하여야 한다.

□ 계약목적

- 가. 이용계약은 이용자와 기관 간에 서비스 제공에 관한 조건과 내용을 명시하고, 양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나. 서비스제공자(기관)과 서비스대상자(보호자)는 계약에 명시된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의 체결

- 가.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와의 계약도 유효하다. 단 법적 권한이 없는 보호자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거나 보호자 전원과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나. 계약서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표준약관 제10068호)
 -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3) 기타 기관 이용에 필요한 서류
- 다. 이용자가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제출 하여야 한다.

-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 2)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 1부
 - 3) 기타 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 서류(건강검진결과서 등) 각 1부
- 라. 계약을 체결할 때 기관은 이용자 또는 법정 대리인에게 급여제공의 범위,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 급여제공 직원에 관한 사항, 급여제공시간, 장기요양 급여비용명세서 제공, 본인부담금, 배상책임보험,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급여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이용자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마. 계약서는 계약 당사자 쌍방이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 이용료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① 이용료 및 본인부담금

가. 일반대상자 : 기관의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를 부담한다.

나. 감경대상자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제2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서 정한 감경 적용기준에 해당되는 자

- 1) 저소득 대상(의료기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이용자는 본인부담이용료 전액 면제
- 2) 60% 감경 : 월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 수별 보험료 순위가 25%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
- 3) 40% 감경 : 월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 수별 보험료 순위가 25% 초과 50%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

②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기관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③ 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며, 자세한 금액은 [붙임 1]과 같다.

④ 비급여 항목 및 기타 비용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 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나.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붙임 1]의 비급여 항목 세부 기준에 따른다.

다.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진료비는 이용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식사 1회: 2,500원
- 간식 1회 : 500원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권리

- 1)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 3)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의무

-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 의무
-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 의무
- 3)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 5)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 계약의 해제

① 계약 해제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나.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지를 통지한 때

다. 이용자가 사망한 때

라. 이용자가 이용계약서 내지 서약서 상의 이용규정을 위반한 때

마.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기관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신체적 손해를 끼쳤을 때

바.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기관에 손해를 끼쳤을 때

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노인복지법 등에 따른 계약의 해지·해제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제①항 마.호 내지 사.호의 경우 기관의 해지 통지는 해지일로부터 최소 14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③ 계약의 해제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계약의 정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와 기관은 양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로 계약 해지에 갈음하여 그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